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98,309,858	47,949,296
일반회계	1,331,107,064	39,933,212
특별회계	267,202,794	8,016,084
공기업특별회계	200,274,395	6,008,2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378,802	2,621,3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2,895,593	3,386,868
기타특별회계	66,928,399	2,007,852
주택사업특별회계	72,555	2,17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000,415	270,012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002,144	900,064
교통사업특별회계	23,463,345	703,900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185,940	95,578

제 2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871,01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